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69 발의연월일: 2020. 11. 12.

발 의 자:성일종·구자근·김태흠

이명수 · 윤두현 · 전주혜

윤재옥 • 강민국 • 하태경

김정재 • 이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 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 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70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과 제7 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으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특수임무유공자
-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 위자 1명
-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활조정수당"으로 본다.

- ③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조사·질문 등 수급권 확인·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과 금융정보제공 및 생활조정수당 신청의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및 권리의 보호와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을 "보조금,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75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 소멸) ①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 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 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 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보 과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보 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조금 지급 및 제75조의2에 따 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른 생활조정수당-----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5조의2(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 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 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 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 금"은 "생활조정수당"으로 본다. ③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조사·질문 등 수급권 확인·심 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 한과 금융정보제공 및 생활조 정수당 신청의 촉진 등에 관 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 ④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및 권리의 보호와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저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2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 개발훈련비, 제29조의2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33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②·③ (생 략)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저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 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 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ㅂㅈ그 - 케70ㅈ이오세
<u>보조금, 제70조의2에</u>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 수당을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1. ~ 3. (현행과 같음)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1. ~ 3. (현행과 같음)②・③ (현행과 같음)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 수당을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세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 수당을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세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 수당을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세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 수당을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세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11. ~ 13. (생략) ② ~ ④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75조의2에 따른 생활
조정수당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
한 조사
1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